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4. 10 선고 2019가단491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 변호사 이창희

피고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변론 종결2020. 3. 27.

판결 선고2020. 4. 10.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8. 8.

6. 접수 제420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3. 4. 17.

접수 제121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7. 16. 접수 제373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96.경 착공된 진주시 ○ 소재 근린생활시설 공사의 건축주이자 도급인이고, 피고들은

위 공사의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위 공사 현장에 물품을 공급한 사람들이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1998. 12. 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 합계 1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1998. 8. 6. 피고들과 사이에, 전항 기재 미지급 대금 합계 12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들, 채무자 원고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8. 8. 6. 접수 제42018호로 위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원고가 변제기라고 자인하는 2008. 12. 말부터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이 지난 2012. 1. 1.경, 물품대금 채권의 경우에는 늦어도 10년이 지난 2019. 1. 1.경에는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가소18036호로 매매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지원은 2003. 10. 16. 원고는 피고 회사에 '9,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회사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5타채588호로 원고가 주식회사 P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Q로 동산경매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 판단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확정 판결에 기하여 2007.경 동산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위 동산경매로 인하여 일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집행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산경매의 집행이 완료된 2007.경부터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회사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D, L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가 반드시 지급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이제 와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위 피고들의 각 주장을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제기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각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재철

별지